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23호 2021. 4. 22.(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83호 초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1
- 사천시 고시 제87호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 4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549호 공장등록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11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531호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면개정 입법예고 ----- 12
- 사천시 공고 제563호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 47
- 사천시 공고 제564호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입법예고 ----- 55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사천시 고시 제2021-83호

초 전 지 구 소 규 모 배 수 개 선 사 업

사천시에서 추진 중인 초전자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22.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 초전자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903-22 일원
3. 사업의 목적 : 인명피해 및 침수 등 피해 위험이 높아 신속한 정비를 통해 침수로 인한 피해예방과 영농의 편의성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 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가. 사업의 내용
 - 우수지 설치 1개소($V=28,320\text{m}^3$)
 - (1호배수로) 보강토 옹벽($H=2.7\text{m}$) $L=403.0\text{m}$
 - (1호배수로) 암거($3.0\times 2.0@3$) $L=46.0\text{m}$
 - (2호배수로) 개거(3.0×2.0) $L=344.0\text{m}$
 - (2호배수로) 개거(0.8×0.8) $L=319.0\text{m}$
 - 배수펌프장 설치(게이트펌프 $Q=70\text{m}^3/\text{min}$, 2기)
 - 나. 사업의 구역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903-22 일원
5. 사 업 비 : 6,000백만원(국비4,800 , 도비360 , 시비840)
6. 사업기간 : 2021. 3. ~ 2024. 12.(46개월)
7. 사업의 효과 : 침수로 인한 피해예방과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
8.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9.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참조
10. 관계도서의 비치 및 열람 장소 : 사천시청 건설과(전화 055-831-3275)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붙임]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세목조서

○ 사업명 : 초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편입 토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시	면	리					주 소	성 명	
1	사천	사남	초전	893	답	772.0	120.0	사천시 사남면 초전로	박*자	
2	사천	사남	초전	891	도	6,930.0	1116.9		경상남도	
3	사천	사남	초전	893-2	도	1,005.0	125.4		국(국토교통부)	
4	사천	사남	초전	895-3	도	82.0	28.0		경상남도	
5	사천	사남	초전	895-2	답	540.0	540.0	사천시 사천읍 사천향교로	이*희	
6	사천	사남	초전	902-2	답	843.0	376.0	사천시 사천읍 사천향교로	이*희	
7	사천	사남	초전	902-4	답	707.0	157.0	사천시 사천읍 사천향교로	이*희	
8	사천	사남	초전	902-5	답	1,395.0	160.0	경산시 삼풍동 삼풍로	박*재	
9	사천	사남	초전	903-9	답	108.0	108.0	사천시 사남면 초전2길	최*순	
10	사천	사남	초전	903-10	답	2,113.0	745.0	거제시 장평1로	이*자	
11	사천	사남	초전	903-12	답	1,012.0	420.0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정*조	
12	사천	사남	초전	903-14	답	1,694.0	166.0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비읍로4번길	조*식	
13	사천	사남	초전	903-15	답	1,643.0	1,643.0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강*진	
14	사천	사남	초전	903-43	구	97.0	97.0		사천시	
15	사천	사남	초전	903-17	구	110.0	110.0		사천시	
16	사천	사남	초전	903-44	구	8.0	8.0		사천시	
17	사천	사남	초전	903-22	답	2,103.0	2,103.0	진주시 에나로228번길	김*순	
18	사천	사남	초전	903-3	제	2,316.0	275.0		국(국토교통부)	
19	사천	사남	초전	903-6	전	524.0	524.0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장*수	
20	사천	사남	초전	903-7	답	2,081.0	127.0	사천시 용현면 선진공원길	정*호	
21	사천	사남	초전	903-26	제	159.0	78.0		국(건설부)	
22	사천	사남	초전	894-4	답	119.0	40.0	사천시 사남면 초전1길	강*순	
23	사천	사남	초전	851-4	답	872.0	404.0	사천시 사남면 초전1길	강*순	
24	사천	사남	초전	851-2	도	970.0	526.0		국(농림축산식품 부)	
25	사천	사남	초전	902-3	답	304.0	304.0	진주시 상평동 솔밭로91번길	이*엽	
26	사천	사남	초전	903-23	답	350.0	350.0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장*수	
27	사천	사남	초전	903-24	답	305.0	305.0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장*수	
28	사천	사남	초전	903-25	제	126.0	41.0		국(건설부)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29	사천	사남	초전	1996	구	4,419.2	196.6		사천시	
30	사천	사남	초전	974-3	답	1,646.0	34.0	사천시 용현면 선진공원길	정*호	
31	사천	사남	초전	974-4	답	26.0	26.0	사천시 용현면 선진공원길	정*호	
32	사천	사남	초전	974-2	답	636.0	73.0	하동군 청암면 청암물길	강*석	
33	사천	사남	초전	973-1	답	378.0	77.0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116번길	김*영	
								사천시 향촌동 상향길	박*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좌동순환로299번길	엄*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명지오션시티6로	문*정	
34	사천	사남	초전	972-2	답	613.0	75.0		사천시	
35	사천	사남	초전	929	도	281.0	22.0		국(농림축산식품 부)	
36	사천	사남	초전	927-2	답	1,724.0	73.0	사천시 사남면 초전수양길	하*주	
37	사천	사남	초전	927-3	제	134.0	134.0		국(건설부)	
38	사천	사남	초전	927	답	1,735.0	56.0	사천시 사남면 초전수양길	하*주	
39	사천	사남	초전	927-4	제	53.0	53.0		국(건설부)	
40	사천	사남	초전	926-2	전	1,020.0	179.0	진주시 가좌동 내동로348번길	강*문	
41	사천	사남	초전	926-3	제	104.0	85.0		국(건설교통부)	
42	사천	사남	초전	924-2	답	3,947.0	338.0	진주시 충무공동 소호로19번길	정*화	
43	사천	사남	초전	924-6	제	159.0	107.0		사천시	
44	사천	사남	초전	924-4	제	41.0	2.8		국(건설교통부)	
45	사천	사남	초전	924-1	전	349.0	126.0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윤*호	
46	사천	사남	초전	922-4	도	245.0	59.0		국(농림축산식품 부)	
47	사천	사남	초전	922-3	전	264.0	46.0	사천시 사남면 초전수양길	원*호	
48	사천	사남	초전	142-2	구	6,803.0	92.7		국(농림축산식품 부)	
49	사천	사남	초전	973-2	제	166.0	1220.0		국(건설부)	
50	사천	사남	초전	972-3	제	85.0	65.0		국(건설부)	

○ 사업명 : 초전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지장물건)

연번	물건 소재지					지 목	물 건 명	구조/규격	수 량	비 고
	시	면	리	본번	부번					
1	사천	사남	초전	927		답	관정		1EA	
2	사천	사남	초전	924	2	답	자귀나무	7년생	60주	
3	사천	사남	초전	922	3	전	배나무	10년생	6주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사천시 고시 제2021-87호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0-405(2020.12.10.)호로 시행계획변경 고시된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의 시행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4월 22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정동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3,286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변경)

가. 주요사업내용(당초)

(단위 : 백만원)

사업분야	세 부 사 업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고
	합 계		3,286	
기초생활기반확충			1,604	
	정동권역 문화·복지공간 조성	센터 신축 180㎡, 다목적체육공간 신축 215㎡	1,604	

사 천 시 공 보

제 723 호

사업분야	세 부 사 업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고
지역경관개선			861	
	수청마을 숲 정비	주차장 A=1,697㎡, 화장실 등	422	
	예수마을 쉼터 조성	휴게시설 1식	182	
	예수마을 둘레길 조성	둘레길조성 420m	245	
	권역 안내판	1식	12	
지역역량강화			280	
	교육 및 견학	1식	130	
	맞춤형 컨설팅	1식	41	
	마을축제 활성화 지원	1식	90	
	운영지원	1식	19	
부대비용		기본 및 실시설계 등	541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가. 주요사업내용(변경)

(단위 : 백만원)

사업분야	세 부 사 업	사 업 개 요	사업비	비고
합 계			3,286	
기초생활기반확충			1,705	
	정동권역 문화·복지공간 조성	센터 신축 180㎡, 다목적체육공간 신축 215㎡	1,705	
지역경관개선			780	
	수청마을 숲 정비	주차장 A=1,697㎡, 화장실 등	388	
	예수마을 쉼터 조성	휴게시설 1식	55	
	예수마을 둘레길 조성	둘레길조성 420m	325	
	권역 안내판	1식	12	
지역역량강화			215	
	교육 및 견학	1식	39	
	홍보마케팅	1식	29	
	컨설팅	1식	18	
	정보화구축 및 운영지원	1식	22	
	마을경영지원	1식	107	
부대비용		기본 및 실시설계 등	541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6.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사천지사장)

7.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월 ~ 2021년 12월 31일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당초)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합 계					7,446							
1) 정동권역 문화복지공간 조성					2,439							
1	정동	대곡	668-3	답	852	852	최*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_**				센터
2	〃	〃	668-11	답	374	374	〃					〃
3	〃	〃	668-12	답	121	121	〃					〃
4	〃	〃	655-2	답	151	151	사천시					체육 공간
5	〃	〃	656-2	답	941	941	사천시					〃
2) 수청마을 숲 정비					1,699							
1	정동	수청	112-1	천	2978.0	37	경상남도					
2	〃	〃	137-2	도	483.0	47	농림축산 식품부					
3	〃	〃	139	답	457.0	457	사천시					
4	〃	〃	139-1	답	861.0	861	이*임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_*				
5	〃	〃	139-2	도	181.0	148	사천시					
6	〃	〃	139-3	도	83.0	81	사천시					
7	〃	〃	139-4	답	40.0	37	경상남도					
8	〃	〃	139-5	답	31.0	4	경상남도					
9	〃	〃	258	천	70,539.0	27	국토 교통부					
3) 예수마을 쉼터 조성					880							
1	정동	예수	446-2	답	830	90	기타 법인 단체					
2	〃	〃	447-2	답	31	31	사천시					
3	〃	〃	667-16	답	770	616	사천시					
4	〃	〃	797-3	도	405	143	농림축산 식품부					

사 천 시 공 보

제 723 호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4) 예수마을 둘레길 조성					2,428							
1	정동	예수	754	구	7,058	1,750	농림 축산 식품부					예수 마을 둘레길
2	〃	〃	180-3	답	1,573	327	진*임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				〃
3	〃	〃	180-4	답	142	142	영화*** ***	진주시 상봉동 ***				〃
4	〃	〃	181-6	대	443	57	이*수	사천시 정동면 옥산로 ***, ***동***호	정동 농업 협동 조합			〃
5	〃	〃	181-8	답	152	152	〃	〃	〃			〃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가. 토지조서(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합 계					7,446							
1) 정동권역 문화·복지공간 조성					2,439							
1	정동	대곡	668-3	답	852	852	최*경	부산시 동래구 운천동 ***_**				센터
2	〃	〃	668-11	답	374	374	〃					〃
3	〃	〃	668-12	답	121	121	〃					〃
4	〃	〃	655-2	답	151	151	사천시					체육 공간
5	〃	〃	656-2	답	941	941	사천시					〃
2) 수청마을 숲 정비					1,699							
1	정동	수청	112-1	천	2978.0	37	경상남도					
2	〃	〃	137-2	도	483.0	47	농림축산 식품부					
3	〃	〃	139	답	457.0	457	사천시					
4	〃	〃	139-1	답	861.0	861	이*임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_*				
5	〃	〃	139-2	도	181.0	148	사천시					
6	〃	〃	139-3	도	83.0	81	사천시					
7	〃	〃	139-4	답	40.0	37	경상남도					
8	〃	〃	139-5	답	31.0	4	경상남도					
9	〃	〃	258	천	70,539.0	27	국토 교통부					
3) 예수마을 쉼터 조성					880							
1	정동	예수	446-2	답	830	90	기타 법인 단체					
2	〃	〃	447-2	답	31	31	사천시					
3	〃	〃	667-16	답	770	616	사천시					
4	〃	〃	797-3	도	405	143	농림축산 식품부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4) 예수마을 둘레길 조성(변경)					2,428							
1	정동	예수	754	구	7,058	1,750	농림 축산 식품부					예수 마을 둘레길
2	〃	〃	180-3	답	1,573	327	진*임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				〃
3	〃	〃	180-4	답	142	142	영화*** ***	진주시 상봉동 ***				〃
4	〃	〃	181-6	대	443	57	이*수	사천시 정동면 옥산로 ***, ***동***호	정동 농업 협동 조합			〃
5	〃	〃	181-8	답	152	152	〃	〃	〃			〃
6	〃	〃	180-9	도	37	37	진*임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				〃

나.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정동면 대곡리	656-2	업무 및 창고시설	조립식	320㎡	수청 마을 회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				

9.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시사
지역개발부(055-851-814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549호

공장등록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제1항에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송달하였으나,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사 천 시 장

1. 공고 제목: 공장등록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4. 22.~2021. 5. 7.(16일간)
3. 처분 대상

구 분	회사명	대표자	공장 소재지	취소일
공장등록 취소	영 진	정*갑	경남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8-2, 14-1	2021. 4. 6.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공장 폐업
5. 처분 내용: 사업계획승인 취소
6. 법적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7조제1항제4호
7. 안내사항: 사천시청 산업입지과 (☎055-831-3456)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사천시 공고 제2021-531호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및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면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반영하고,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재정비 하며, 「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정에 따라 공무원 제안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조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조례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제안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조례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제안의 심사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조례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마. 시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조례 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바. 제안의 사후관리 및 제안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조례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사. 목적,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규칙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아. 제안의 심사, 제안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규칙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차. 채택제안의 실시, 재심사 요청 및 실시성과의 측정 등에 관한 사항(규칙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국민 제안 규정」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나.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53,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시민제안 제도 운영 조례」 및 「사천시 시민제안 제도 운영 시행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사천시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다른 지역주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실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靖)·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상위기관에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시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걸리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모제안의 모집) 시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우수제안으로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
3. 표창 및 부상금 지급 결정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사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천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실질심사가 가능한 접수된 제안의 업무 담당 팀장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안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심사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여 제안자가 제안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실무 심사 후 그 결과를 제안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제11조(제안심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 조회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안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요청)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선·보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안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표창 및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장 시상 및 보상 등

제17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해당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하나의 제안 당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2. 은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 입 선: 10만원 이하 상품권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창 및 부상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⑤ 시장은 시상 후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을 상위기관에 자체우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보상) 시장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제안의 사후 관리

제19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실시성과의 측정)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확인·점검) 시장은 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확인·점검 결과 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장 제안의 활성화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제22조(제안의 발굴 노력) ① 시장은 시민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밀착형 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3조(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민 제안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제3조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1호를 제20호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관 련 법 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 제안 규정

제6조(국민제안의 접수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⑦ 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③ 제안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국민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채택의안의 시상)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제안(이하 “공무원제안”으로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제24조(확인·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확인·점검 결과 국민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이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시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심사 시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반기별로 하며, 사정에 따라 분기별로 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심사 및 등급 결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제안심사 실무평가서를 제안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제안 불채택 시 생략할 수 있다.

③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심사위원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의 등급을 심사위원의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참가위원의 수로 나눈 점수로 결정한다.

④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창의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한다.

제6조(제안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기준) ① 제안의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입선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으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의 등급 외에 해당하는 제안이다.

③ 별표 1에 따른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제7조(채택제안 실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실시성과의 측정) 조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조례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별표 1]

제안의 등급에 따른 부상(副賞)금 지급 기준(제6조 관련)

제안 등급	부상(副賞)금	비 고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90점 이상
은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9점 ~ 81점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80점 ~ 71점
장려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70점 ~ 61점
입 선	10만원 이하 상품권	등급 외
불채택 제안	1만원 상품권	1명 최대 6매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별표 2]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세부심사내용

심사항목	세부심사내용
실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의 신속한 실시로 정책반영이 가능한가?
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능률성 또는 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천시 소속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계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입 선
점 수	90점 이상	89점 ~ 81점	80점 ~ 71점	70점 ~ 61점	60점 이하 (등급 외)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총점 100점)				
실시 가능성 (20)		즉시 가능 (20)	1년 이내 (16)	2년 이내 (12)	3년 이내 (8)	
창의성 (20)		획기적인 내용 (20)	다소 독창적 (16)	간단한 아이디어 (12)	기존 제안과 크게 변화 없는 내용 (8)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	능률성 (15)	매우 크다 (15)	다소 크다 (12)	보통이다 (9)	약간 있다 (6)	
	경제성 (15)	3억 원 이상 (15)	2억 원 이상 (12)	1억 원 이상 (9)	5천만 원 이상 (8)	
적용 범위 (15)		전 행정기관 (15)	다수 행정기관 (12)	일부 행정기관 (9)	소속 부서 (6)	
계속성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 (12)	3년 이상 (9)	1년 이상 (6)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별지 제1호서식]

제 안 서			
제 목			
동일·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없음 [] 있음(제출기관: _____, 제출일시: _____)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처리 결과 통보 방식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우편	주소:	
<p>「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_____ 년 _____ 월 _____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시장 귀하</p>			
<p>※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p>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뒤쪽)

① 제 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작 성 요 령 >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	기여도 (%)	업 무 분 담 내 용

공동제안의 부상금은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별지 제3호서식]

<u>제 안 접 수 증</u>			
제 목			
주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기여도(%)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기여도(%)
세부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등)			
처리상황 공개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p>「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시 제안담당자 (서명) (전화번호 :)</p>			

148mm×210mm(일반용지 3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별지 제4호 서식]

사천시 제안심사 실무평가서 (부서 검토)

제 목	
심사번호	
1. 종합 의견	
2.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추 천 () 불추천 ()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제안이 불채택 된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제안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별지와 같이 제출함

검토자 업무담당팀장 성명 (서명)
확인자 부 서 장 성명 (서명)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별지 제5호 서식]

사천시 제안심사위원 평가서

심사위원명 :

(인)

심 사 평 가 서

접수번호

제 목

심사의견

심사기준 및 점수

소계 (100)	실시가능성 (20)	창의성 (20)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	적용 범위 (15)	계속성 (15)

- 금 상 (90점 이상)
- 은 상 (89점 ~ 81점)
- 동 상 (80점 ~ 71점)
- 장려상 (70점 ~ 61점)
- 입 선 (60점 이하, 등급 외)

※ 등급 결정 점수는 심사위원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참가자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별지 제7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실시부서명 :

제안제목					
제안종류		채택연도			
제안자	성 명	주소 또는 소 속		직 급	
실시자	성 명	직 급			
실시 성과 평가	최초 실시일자		효과측정 기간		
	측정기간	실 시 내 용	예산절감액	시세·세외 수입 증대액	행정개선효과
	~				
	~				
	~				
	~				
	~				
	~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별지 제8호서식]

재심사요청서

수 신 : 사천시장

제안제목					
접수번호		제안종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명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u>제안관리 기록부</u>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제안등급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화번호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비고	
실시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기여도(%)			비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상	포상종류			인사 특전 부여	종류
	부상금			일자	
제안실시	실시일자			실시근거	
	실시여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뒤쪽)

실시성과 평가	측정기간	예산 절감액	시세·세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과
	~			
	~			
	~			
	~			
상여금 지급	예산절감액		시세·세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과			
	상여금 지급액		지급일자	
권리의 승계	종류	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사천시 공고 제2021-563호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산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지역 수산물(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유통·판매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명칭 및 위치, 기능, 사용·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수산물 유통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수산물 유통시설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기타(지도·감독, 시행규칙, 준용) 필요 사항(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천 시 공 보

제 723 호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110, FAX : 831-6032)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 유통시설”이란 사천만 명품 서포 굴 유통복합공간 시설을 말한다.
2. “판매시설”이란 수산물 유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획하여 판매장과 음식점 등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재산”이란 사용허가등을 받은 판매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용허가등을 받아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수산물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수산물 유통시설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2. 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유통시설의 수익금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4.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른 수산물 유통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사천만 명품 서포 굴 유통복합공간(1단지):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30-1번지
2. 사천만 명품 서포 굴 유통복합공간(2단지):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30-6번지

제6조(수산물 유통시설의 기능) 수산물 유통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지역특산물)의 유통·판매 등 지역 어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와 이용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장 시설의 사용·관리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제8조(사용허가등) 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또는 대부료) ① 수산물 유통시설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산출시가 등)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 및 사용허가등을 받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휴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재산의 변경 금지) ①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시장의 승인을 받은 옥외 광고물의 경우 그 설치는 옥외 광고물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옥외 광고물 등의 설치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사용허가등의 취소 또는 해지)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제3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등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등의 취소나 해지를 원할 경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원상복구 등)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등의 기간이 끝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사용재산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이 변경된 부분이 사용재산의 유지·관리 등에 장애가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책임으로 원상복구한 후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관리위탁

제14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관리를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성과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제15조(위탁재산의 관리 등) 수산물 유통시설의 위탁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 10조, 제11조,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6조(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형사사건 등에 관련되어 위탁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사천시 공고 제2021-564호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수산물 유통시설의 사용허가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지)
- 다. 수산물 유통시설의 휴업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수산물 유통시설의 원상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마. 수산물 유통시설의 사용허가등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사 천 시 공 보

제 723 호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110, FAX : 831-6032)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 시행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등의 변경)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이하 “사용허가등” 이라 한다)을 받아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허가등의 변경 신청서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휴업신청)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휴업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원상의 변경) 사용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원상변경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등의 취소 및 해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취소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취소(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23호

[별지 제4호서식]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취소(해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법 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 용 재 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 간				
취소(해지)의 사유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의 취소(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	-----------------------------